

환경과 연계된 국제적 무역조치에 대한 최근 논의동향 및 전망

안기철
산업연구원 환경·소재산업연구실



환경문제가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선진국 주도의 국제기구인 WTO, ISO 및 OECD 등을 통하여 환경관련 무역규제 또는 환경경영 그리고 생산방법 및 공정(PPMs)에 대한 규제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선진국이 대체로 그들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어, 환경관련 무역규정이 도입될 경우 환경수준이 낮은 개도국의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WTO, 환경규정의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

WTO에서는 환경관련규정에 관하여 다양한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의 초점은 다음 몇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GATT/WTO 제 20조의 일반적 예외조항에 관한 사항이다. WTO의 산하 무역·환경위원회(CTE)에서 선진국들은 環境目的 무역조치에 대해 WTO차원에서의 기준과 근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상기 GATT 제20조의 개정 또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둘 조항은 GATT내에서 환경을 이유로 한 무

역규제의 근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조항이 갖는 의미의 불명료성과 그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당사국간에 많은 논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에 대해 WTO차원에서의 기준과 근거가 제공될 수 있도록 GATT 제20조의 개정 또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PPMs와 관련하여 현행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원칙을 수정하자는 제안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동제안은 '청정한' 방법과 '오염적' 방법을 불문하고 생산방법이나 공정의 차이를 이유로 국내외 제품간 어떠한 차별대우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동종상품(like products)의 개념]을 수정하자

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논의의 배경에는 수출국이 수입국(또는 경쟁국)에 비해 낮은 환경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로 인해 경쟁국의 산업은 비교 열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경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셋째, GATT 제25조 웨이버조항의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동조항은 환경을 이유로 GATT원칙에 상치되는 조치들의 활용을 허용하는 의무면제조항을 의미한다. 개정논의의 핵심은 현재 GATT내에서 수용 가능한 것을 보다 충분히 활용하고, 나아가 환경목적의 광범한 예외를 인정하도록 GATT/WTO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는 환경과 무역을 중심이슈로 다루기 위해 WTO체제하에서 GATT협정을 보다 세분화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GATT 제25조하에서 체약국은 환경관련 무역 조치로 웨이버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이는 현행 GATT/WTO협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환경웨이버(Environmental Waivers)는 체약국에게만 허용되는 협의의 현행 GATT 웨이버에 비해 보다 일반적 형태를 띠게 될 수 있다. 또한 소집단 체약국에 환경목적의 특정 무역규제조치의 활용이 동시에 허용되는 집단웨이버(Bloc Waivers) 형태를 떨 수 있으며, 환경적으로 예외가 허용되는 일반조건을 설정하는 광범위한 웨이버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WTO 일반규정의 개정논의와 함께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에코라벨의 TBT협정 적용성 여부 논의

환경라벨은 製品壽命週期評價(life cycle assessment)를 통하여 환경마크를 부여함으로써 환경의식이 높은 消費市場에서는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도 국별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20여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에코라벨은 환경 오염 부하가 적은 제품의 시장침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에코라벨의 인정 기준이 외국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透明性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수입을 부당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제품수명주기평가에 의한 에코라벨은 제품의 物理的特性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제품의 生產方法 및 工程(PPMs)의 오염부하 까지도 포함하게 되어 동종상품간의 무차별성을 규정하는 GATT/WTO협정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제품무관 PPMs(non-product related PPMs)에 대해서는 GATT · WTO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에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삼림경영하에서 생산된 목재, 돌고래를 훈획하는 어법으로 포획한 참치, 오존층파괴 물질을 세정제로 사용하여 생산된 마이크로칩이 해당된다.

따라서 WTO의 CTE에서는 첫째, 에코라벨의 투명성의 향상을 실현하는 방법, 둘째, 제품과 무관한 PPMs에 기초한 에코라벨이 [제품의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TBT협정)]의 대상 즉, 임의규격에의 해당 여부가 논의의 초점이 되어 왔다.

CTE에서 에코라벨의 논의를 주도하여 온 카나다는 에코라벨 전반을 TBT협정의 대상으로 하고, 동 협정상의 통보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하고, 제품에 관련이 없는 PPMs에 기초한 에코라벨이 TBT협정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제품무관 PPMs이 이미 WTO/TBT상 허용되므로 에코라벨도 TBT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EU는 TBT협정의 적용범위의 문제를 투명성의 문제와 떼어 놓는 것은 오히려 곤란을 초래할 지 모른다고 하면서 제품무관 PPMs는 TBT협정에 포함시키지 말고 투명성의 강화로 에코라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 해 12월에 개최된 제1차 각료회의에서는 PPMs에 대해서 명시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에코라벨에 대한 규정을 TBT의 규정과 엄밀하게 비교, 검토함으로서 차

차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환경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도 진행

知的財產權이 과연 기존의 GATT체제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대상인 지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UR협상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지적재산권은 GATT체제가 세계경제의 변화를 신축적으로 수용함으로서 신국제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UR타결과정에서 신의제로 채택되게 되었다.

TRIPs이라고 불리는 UR 지적재산권의 주요목표는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지적재산권의 國際交易上의 왜곡과 장애를 완화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지적재산권제도는 원래 無體財產權을 다루는 국내법체계로서 사실상 상품, 서비스의 교역과는 무관한 것이나 일부 국가의 주도로 新分野로서 WTO체제 내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일반 무역규범과는 달리 별도의 전문적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허권(IPR)이 바로 貿易規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TRIPs은 환경관련 무역규범을 다루는 貿易·環境論議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TRIPs 규정 중 환경과 관련한 조항은 제 27조 2항으로서, 동조항에 따르면 인류, 동식물의 생명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발명은 特許對象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제품의 사용이 특허권 보유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각국의 주논의 대상으로 부각되지는 못하였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개도국에 賦存되어 있는 생명공학자원에 대한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環境親和의 기술의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TRIPs 규정의 개정여부가 의제로 제기되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설정이나 기술이전 관련 TRIPs의 규정개정의 검토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미국의 대표는 TRIPs협정이

가능한 한 빨리 기존의 義務條項대로 즉시 준수되는 방향으로 완전히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반면 인도를 포함한 개도국은 환경보호 여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리고 기술이전 관련 TRIPs 규정의 완화를 위한 해석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TRIPs의 규정이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추후 논의 대상에 기술접근, 이전, 생명공학 자원보호 중대를 위한 검토가 반영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MEAs의 환경관련 무역조치 수용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

多者間環境協定(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 MEAs)은 대체로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협약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의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그 조치들은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과 같은 인센티브의 성격을 지니거나 貿易規制 등과 같은 제재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다자간환경협정은 180여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무역제재조치를 내포하고 있는 협약 수는 10%인 18개에 이른다. 무역규제조치의 대표적인 다자간환경협정 사례로 꼽히는 몬트리올의정서의 경우, 비체약국이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의정서의 실효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無貨乘車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비체약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몬트리올의정서와 같은 MEAs의 사례에서 보듯이 관련당사국간에는 비체약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가 정당화되는 사안에 대해 특별한 異論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CTE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정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MEAs에 대해서 特別待遇를 인정하고 또 이를 위해 현행의 GATT/WTO협정의 일반적 예외를 규정하는 GATT 제20조를 개정해야 할지 여부가 최대의 爭點이 되어 왔다. 즉, MEAs에 기초한 무역제한조치를 GATT/WTO협

정상 정당한 것으로서 인정하여 무역제한조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분쟁해결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수용여부에 대한 이러한 저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閣僚會議에서는 그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WTO규정의 개정여부를 향후 논의과제로 남겨 놓은 채 결정을 유보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데에는 그동안 貿易措置를 가진 MEAs가 비교적 적은 데다가 아직 WTO에서 분쟁이 발생한 적이 없고 또한 GATT 20조의 一般的例外條項이 WTO로 하여금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를 수용할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이 감안되었기 때문이다.

ISO, 일부규격 도입속 후속작업 가속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ISO)에서는 TC/207을 통하여 환경영영에 관련되는 국제인증규격을 마련하고 있다. ISO 9000시리즈로 불리는 「품질인증규격」에 對應되는 개념의 「환경인증규격」은 ISO 14000시리즈라고도 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기업조직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環境經營體制를 평가, 감사하고 인증할 수 있는 국제환경인증규격이다.

동 시스템하에서는 기업이 환경영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건으로서 환경방침, 목적 및 세부목표의 수립, 환경성능의 평가·측정 및 내부감사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절차와 방법, 인증대상 상품선정 및 기준, 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환경용어의 사용요령, 환경심볼에 대한 각종 표시지침 등을 정하고 있으며, 원료의 취득에서부터 폐기를 처리에 이르는 製品壽命의 전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다. 이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기업에게는 국제 환경영영인증인 ISO 14000시리즈중 일부가 부여된다.

환경규격의 국제표준화는 그동안 先·開途國間, 또는 선진국 상호간 다소 의견차이를 보이면서도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어, 지난 95년 6월 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ISO/TC207 제 3차 總會에서 5개 부문이 국가간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지난 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합의된 최종안 5개부문이란 환경영영시스템 원리 시스템 및 지원기술에 관한 일반지침을 정하고 있는 ISO 14004, 동 사양서와 이용절차를 나타내는 ISO 14001, 環境監査의 일반원칙을 정하는 ISO 14010, 환경감사의 지침, 감사절차, 환경영영시스템의 감사 등을 규정한 ISO 14011.1 및 환경감사의 자격기준을 설정한 ISO 14012 등이다.

지난 해 6월 하순에 열린 ISO/TC207 제4차 총회에서는 SC3의 환경라벨과 SC4의 환경성과평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자기선언형(Self Declaration) 인증라벨과 제3자 인증라벨에 대해서는 국가간 의견차이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기선언형 인증라벨의 경우 자기선언할 항목과 범위가 3차 총회에서 정해졌음에도 공통의 심볼마크 및 평가기준의 채택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국제규격초안(영문표기는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 DIS로서 발효직전단계를 말함)을 앞두고 답보상태에 있다.

또한 제3자 인증라벨에 대해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국의 라벨제도의 방식과 운용방법이 상이하여 그것을 하나의 규격으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제3자 인증라벨의 적용요건에 제품 자체가 갖는 환경적 영향 외에 제품의 제조단계에서 발생할 環境影響도 포함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과 일본은 제조과정의 환경영향이 환경영영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ISO시리즈는 권장사항임에도 규제효과 우려돼

ISO 14000시리즈는 ISO 9000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강제규정이 아닌 任意規程이다. 기업들이 이를 준수해야 할 강제적인 의무가 전혀 없고 遵守與否는

단순히 기업의 자율적인 봇이다. 뿐만 아니라 상품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환경라벨링부문에서는 환경마크 및 宣言文句의 기준과 절차로 인해 외국제품이 불공정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면 왜 ISO의 環境規格 추진동향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ISO 14000시리즈가 채택될 경우에 갖게 될 象徵的인 意味가 매우 큼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선진국 소비자들은 대체로 환경상품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동일한 성능을 지닌 同種商品일지라도 환경친화성의 정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보다 높은 구매욕구를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친화성에는 제품 자체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즉 이들은 제조과정이 汚染誘發의 상품보다는 그렇지 않은 상품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국 시장에서 환경친화성 여부가 기준시장을 유지하거나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임은 自明한 이치이다. 이는 환경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환경인증의 획득사실을 긴요한 販促戰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각국이 환경이나 무역관련법률에 이 표준을 원용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이 규격의 인증을 구매요건으로 요구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환경표준규격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강제성을 떨 수도 있다. 따라서 輸出指向의 기업의 경우 환경영경제의 구축은 기업활동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OECD, PPP에 대한 논의도 한창

환경의 유지·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재화의 가격에 내부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汚染者負擔原則 (Polluter Pays Principle : PPP)이 1972년에 OECD에서 일종의 다자간환경협정의 형태로 채택된

이래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중 최근들어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지속되고 있어 향후 이 원칙의 도입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PPP가 OECD에서 채택된 지 20여년이 지나도록 GATT·WTO체제하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PPP에 대한 국제적 논의 자체도 자제되어 왔다. 이는 환경의 직접적인 汚染者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며, 전통적으로 내륙 하천주변에 많은 산업입지를 갖는 개도국이 WTO에서 PPP가 정식으로 인정되면 생산코스트가 그 만큼 증대할 것을 우려해 반대하였고, 또한 先進國間에도 미묘한 입장차이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의 Superfund의 법조항을 둘러싼 미·EC간 貿易紛爭에서 GATT패널은 OECD 가입국이라고 해서 반드시 PPP를 준수할 의무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패널의 판정은 PPP도 입에 관한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성숙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이 분쟁에서 EC는 OECD가맹국간에 환경정책이 다른 경우 그 격차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과징금이나 수출환급을 행해서는 안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課稅收入에서 얻어지는 편익은 미국내의 생산자에 의해서만 향유되므로 OECD가 권고하는 오염자부담 원칙의 기준에서 보면 美國產品에만 과세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 동법의 주된 목적이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국산품의 구입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를 위한 비용을 징수하는 데에 있다고 항변하였다. 그리고 오염자부담원칙 그 자체가 아직 GATT에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패널의 판단기준은 OECD규정이 아닌 GATT규정이 되어야 하므로 EC가 주장하는 PPP는 당해 무역분쟁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분쟁에서 패널은 미국의 손을 들어 주긴 하였으나, PPP를 GATT규정에 적용할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GATT 貿易環境作業班의 심의에 위임함으로써 명확한 판정을 피해갔다. 이처럼 PPP의 규정적 용여부에 대해 패널이 애매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GATT · WTO 체제내에서 環境費用 内部化의 국제적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쟁의 불씨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후속작업 가속화될 전망

국제기구에서 입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는 선진국이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개도권 국가들은 선진국이 주장하는 논의는 환경을 명분으로 위장된 새로운 보호주의에 다름 아니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이를 '환경제국주의(eco-imperialism)'의 한 표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정치무대에서 새로운 형태의 남북대결구도가 형성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양분되어 진행되고 있는 무역·환경의 연계논의는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진, 개도국간 타결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국제기구 별로 선진국의 노련하게 무장된 이론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는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ISO의 경우 수십개에 달하는 ISO규격 가운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5개의 규격은 각 분야별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반해 향후 채택될 내용은 보다 세부적인 시행지침 등에 관한 것들이다. 따라서 세부지침들은 一般原則이 채택됨에 따라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이다.

분야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나머지 규격들은 대체로 향후 2~3년 이내에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품의 수출에 중요한 影響因子를 갖고 있는 환경라벨링규격(EL)과 제품수명주기평가(LCA)등이 아직까지 WD(Working Draft : 작업 반초안)나 CD(Committee Draft : 위원회초안)의 단계에 머물고 있기는 하나 만일 이 규격이 채택될 경우에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제품수명주기평가의 경우는 현재 OECD의 환경무역위원회와 WTO의 무역환경위원회(CTE)에서 논의되고 있는 工程 및 生產方式(PPMs: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에 관한 규제와 서로 맞물려 있어 앞으로 규격의 제정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OECD에서 한창 논의되고 있는 PPP의 경우도 최근 선진국들이 PPP를 산업경쟁력과의 상호 연계지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국제적 PPP에 대한 논의는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WTO에서의 환경무역논의도 앞으로 구체적 사항을 결정해 가는 과정에서 이해관련 당사국간 논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예상은 선진국 대표들이 WTO 제1차 각료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미국의 대표는 貿易自由化가 국가환경정책을 적절히 보완할 때에만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CTE에 대해 이에 관한 작업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의 리언 브리튼 對外擔當執行委員은 WTO에서 마련한 환경관련 작업이 자신의 기대에 훨씬 못미침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면서 WTO의 신뢰성까지도 문제삼고 나섰다. 독일 대표는 세계화 시대에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책임이 貿易政策決定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MEAs의 시행의 效率性을 제고하기 위해 규정을 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해야

환경보호가 은폐된 보호주의로 작용할 지에 대해서 아직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WTO에서 환경관련 무역 규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와 무역과의 연계의 가능성은 놓후하다 할 수 있다. 더구나 의사 결정과정에서 선진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경우

국제환경규제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주장대로 환경문제와 연계되어 貿易政策이 시행될 경우 環境水準이 낮은 우리나라의 산업에 대한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기업활동과 관련해서 볼 때 현재 국제적으로 시행되거나 거론되고 있는 각종 환경규제조치들은 생산, 수출 및 소비, 제품의 폐기 등 제품의 수명주기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國際環境規制의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다.

먼저 생산단계에서 보면 특정물질이나 성분의 사용이 규제되거나 원료조달 방식 및 공정과 적용기술이 제한됨으로써 원가가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수출 및 소비단계에서는 工程 및 生產方式이나 환경기준 차이에 따른 생산코스트 격차뿐만 아니라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수요 감소가 초래될 것이다. 또한 환경마크제도나 경고라벨 등도 소비자의 환경의식 정도에 따라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제 利潤의 집착에서 벗어나 존립의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한 企業經營을 해야 한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전략은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통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환경을 기업경영의 최상위 개념에 놓고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발생된 폐기물을 잘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流通過程은 물론 제품 자체의 환경성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環境經營概念이 도입되지 않고는 경영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WTO, OECD 및 ISO등 국제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협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겠다. 이를 통해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채택된 의제에 대해서는 이를 조속히 입수하여 그 내용과 의미를 면밀히 파악한 후, 관련당사자들이 미리 대책마련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 전 안내

신화환경(주)

변경된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4
 과천 오피스텔 8층 817호
업 태 : 제조, 도매, 서비스
종 목 : 환경오염방지기자재 의
대표전화 : (02) 503-5050
T E L : (02) 504-4336~8, 3525
F A X : (02) 504-4330~1

앞으로도 귀사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오며, 보다 개선된 양질의 제품을 공급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DONGYANG MECHATRONICS CORP.

변경된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1 한양증권빌딩 12층
T E L : (02) 761-8347
F A X : (02) 783-6913